결혼이민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동시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귀화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1
1. 국제결혼 일반 4
1.1. 국제결혼의 성립 4
1.1.1. 국제결혼의 의미 4
1.1.2.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5
1.2. 국제결혼의 절차 10
1.2.1.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10
1.2.2.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11
1.2.3.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12
1.3. 국제결혼의 효과 13
1.3.1. 국제결혼의 법적효과 13
1.4. 국제결혼의 해소 15
1.4.1. 국제결혼의 무효·취소 15
1.4.2. 이혼 17
2.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21
2.1. 체류자격 21
2.1.1.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21
2.2. 국적 취득 31
2.2.1. 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31
2.2.2. 국적 취득 후 절차 34
3.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38
3.1. 사회복지 등 38
3.1.1. 국민연금의 적용 38
3.1.2.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42
3.1.3. 고용보험의 적용 45
3.1.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51
3.1.5. 국민기초생활보장 55
3.1.6. 운전면허 58
3.2. 자녀의 출생·취학 62
3.2.1. 자녀의 출생 신고 62
3.2.2. 자녀 보육의 지원 65
3.2.3. 자녀의 취학 절차 67
3.3.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70
3.3.1. 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70
3.3.2. 가족·친지의 방문 절차 72
3.4. 배우자 사망·상속 78
3.4.1.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78
3.5. 다문화가족 지원 80
3.5.1.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80

1. 국제결혼 일반

1.1. 국제결혼의 성립

1.1.1. 국제결혼의 의미

"국제결혼"이란?

국제결혼의 개념

▪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래에서 '결혼(結婚)'과 '혼인(婚姻)'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 국제결혼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와 같은 내용적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1항).

▪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 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2항).

▪ 국제결혼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기준으로 볼 때 국제결혼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와 외국인이 (국적이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소개되는 법령 정보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으로서 결혼 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형태인 결혼이민(marriage immigration)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 "법률혼"이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 "사실혼"이란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실혼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

▪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방법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제2항)의 방법이 아니라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의 방법으로 국적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또한, 법률혼 상태인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유를 입증하면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생자의 법적 지위

▹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성립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68조제1항).

▹ 출생자의 성(姓)과 본(本)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혼 상태의 출생자인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혼 상태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의해 종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 그 밖의 사항

▹ 가족관계등록의 변동이 생기지 않아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사실혼 상태의 상대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 사회보장법령상 보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는 배우자 사망 시 각종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 주택을 빌려 쓰고 있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또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1.1.2.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의 성립

결혼의 성립

▪ 법에 의해 인정되는 결혼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됩니다.

▹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결혼 당사자의 혼인 의사, 혼인 적령 등과 같은 내용적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준거법의 결정

▪ 결혼을 하는 각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1항).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 18세의 대한민국 남자와 18세의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내용적 요건

1. 결혼의 의사가 합치될 것(「민법」 제815조제1호)

▪ 가장(假裝)결혼

▹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결혼은 무효입니다.

▪ 조건부·기한부 혼인의사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부·기한부 결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의사능력

▹ 결혼 의사가 성립하려면 의사(意思)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거행하고 사실혼 상태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결혼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2. 혼인적령(18세)에 도달했을 것(「민법」 제807조)

▪ 연령 산정법

▹ 결혼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1988년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2005년 12월 31일 24시에 이르면 18세가 되므로, 2006년 1월 1일 00시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칠 것(「민법」 제808조)

가. 미성년자(19세 미만)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 성년후견인의 정의

▹ '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를 대신해서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 동의 방식

▹ 혼인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4. 근친자(近親者) 사이의 결혼이 아닐 것(「민법」 제809조)

▪ '근친자 사이의 결혼'이란?

▹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결혼을 말합니다.

▪ 촌수·혈족·인척의 정의

▹ '촌수'란 친족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며,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는 1촌, 할아버지·할머니는 2촌, 증조부·모 또는 백·숙부는 3촌, 형제자매 간에는 2촌이고, 배우자 간에는 무촌(0촌)입니다.

▹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같이 혈연이 수직으로 내려가서 연결되는 친족을 직계친족, 공동선조에서 혈통이 내려와 갈라지는 친족을 방계친족이라고 합니다.

▹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민법」 제769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민법」 제771조).

5. 중혼(重婚)이 아닐 것(「민법」 제810조)

▪ 중혼의 의미

▹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가 이중으로 접수되어 법률상 결혼이 2개 이상 성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혼이 아니고, 이혼원인이 될 뿐입니다.

▪ 중혼이 발생하는 경우

▹ 협의이혼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무효·취소된 경우

▹ 재판상 이혼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재판상 이혼이 취소된 경우

▹ 성과 이름을 변조하고 2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결혼한 경우

▹ 실종선고 후 재혼했는데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어 이전의 혼인이 부활한 경우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준거법의 결정

▪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2항).

대한민국의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 형식적 요건: 신고혼주의(申告婚主義)

▹ 결혼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 담당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접수해서 수리(受理)하면 결혼이 성립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지 않아도 결혼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혼인신고접수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에서는 혼인신고의 절차 및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 혼인신고의 주체

√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 혼인신고의 장소

√ 혼인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한 지역 또는 결혼 당사자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혼인신고서 기재사항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결혼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자녀의 성(姓)을 정하기로 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4.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민법」 제809조제1항)

▹ 혼인신고의 방법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두 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 구두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단서).

√ 혼인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와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의 제시와 첨부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별지).

구분	신고서 제출 방법	본인 출석 여부	서명 또는 날인 방법	신분증명서 제시 및 첨부서면
창설적 신고	출석	양쪽 출석	서명	출석자 신분증명서
			날인	출석자 신분증명서
		한쪽 출석	서명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출석자 신분증명서 (다만,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 신고시 불출석자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불필요)
			날인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출석자 신분증명서 (다만,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 신고시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양쪽 불출석, 제출인출석	서명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제출자 신분증명서
			날인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자 신분증명서
	우편		서명	서명공증서
			날인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전단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

1.2. 국제결혼의 절차

1.2.1.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가목).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제1호가목(1) 단서).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 위 2.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나목).

▹ 위 2.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 :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다목].

▪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1.2.2.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다만, 그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제1호가목(2)].

▹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됩니다.

▪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면(이 경우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필요하지 않음)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참고).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기관

▹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1.2.3.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다만, 그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
2.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베트남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에 따른 혼인적령은 남자는 만 20세, 여자는 만 18세이므로 신고일 현재 해당 연령에 이르지 않은 베트남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베트남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됩니다.

▪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베트남에서 결혼 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혼인증서(「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의 등본과 한국어 번역문(「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기관

▹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1.3. 국제결혼의 효과

1.3.1. 국제결혼의 법적효과

준거법의 결정

국제결혼의 준거법

▪ 국제결혼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4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해당 장소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그 결혼의 효력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결혼의 일반적·신분적 효과

▪ 친족관계의 발생

▹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서로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해서 친족이 되고(「민법」 제777조제3호), 한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부계·모계 혈족과 다른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777조제2호).

▪ 부부의 성(姓)

▹ 결혼하기 전 부부의 성(姓)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상속인의 자격

▹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은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03조).

▹ 상속을 받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배우자의 사망과 상속권>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해외유학·해외근무 등 직업상 필요,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말합니다.

▹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26조제2항).

▪ 미성년자의 성년의제(成年擬制)

▹ 혼인적령(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26조의2).

▹ 다만, 「민법」 상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될 뿐이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즉, 상속세를 납부할 때는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재산적 효과

▪ 부부재산계약

▹ "부부재산계약"이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결혼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결혼 중에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829조제3항).

▹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할 때까지 등기해야 그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 법정재산제: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 부부의 재산관계는 「민법」 제830조부터 제833조까지에 따라 처리되는데, 「민법」에서는 부부가 각자 별도로 재산을 소유·관리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즉,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①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민법」 제830조), ③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및 수익합니다(「민법」 제831조).

▪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여기서 '일상가사'란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식료품, 의복, 가구, 공과금 납부 등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해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 여기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란 의식주 비용, 출산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양육비 등을 말하며,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한다는 의미입니다.

1.4. 국제결혼의 해소

1.4.1. 국제결혼의 무효·취소

준거법의 결정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3조 참조).

1. 내용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2. 형식적 성립요건은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진 그 외국법 또는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

결혼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결혼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해당 장소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무효

결혼의 무효사유

▪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

혼인무효확인의 소

▪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가사소송법」에서 관할, 제기권자,

상대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50조제1항).

- 혼인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 혼인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 해소-이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무효의 효과

- 당사자 사이의 효과
  -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은 모두 무효로 됩니다.
  - 또한, 결혼의 무효에 관해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過失)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 대해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 자녀에 대한 효과
  -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는 결혼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취소

결혼취소의 원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혼인취소의 소(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1. 결혼적령(18세)에 미달하는 경우(「민법」 제807조 및 제816조제1호)
2.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08조 및 제816조제1호)
3.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민법」 제809조 및 제816조제1호)

   ※ 이 경우 무효혼인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만 결혼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4. 중혼인 경우(「민법」 제810조 및 제816조제1호)
5.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제2호)

   ※ 상대방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2조).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민법」 제816조제3호)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결혼취소의 절차

- 결혼의 취소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1. 결혼적령의 미달,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 근친혼 금지에 위반한 경우(「민법」 제809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혼인 경우(「민법」 제810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檢事)

- 가정법원에 혼인의 취소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2)

및 제50조제1항).

결혼취소의 효과

▪ 결혼하기 이전으로의 불소급(不遡及)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 ※ 혼인취소의 불소급효의 구체적인 의미
>
> ·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해서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 결혼 중에 출생한 자는 결혼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 양육(養育)책임 및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

▹ 혼인이 취소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민법」 제909조제5항),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협의이혼 시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4항 전단).

▹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1.4.2. 이혼

준거법의 결정

이혼의 일반적 효력

▪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참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내용적 요건

▪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2.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3.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5조 및 제808조제2항).

절차적 요건

▪ 이혼안내절차와 숙려기간

▹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836조의2제2항),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 이혼신고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이혼은 무효이며,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 이혼무효·취소의 전속관할

▹ 이혼의 무효나 취소는 다음 어느 하나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 및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 모두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이혼무효의 소 제기권자

▹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1.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배우자
2. 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0. 7.18. 선고 89므1115 판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경우

※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조정절차

▹ 재판상 이혼은 나류(類)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 재판절차

▹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 이혼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5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

재판상 이혼의 효과

▪ 일반적 효과

▹ 이혼으로서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며,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 자녀에 대한 효과

▹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민법」 제836조의2제4항),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상의 효과

▹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843조).

▹ 또한, 과실(過失)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

2.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2.1. 체류자격

2.1.1.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

▪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전단).

▪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5제1항 본문 참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에 따름)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단서).

-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5,195,752	32,154,216	38,968,428	45,340,314	51,335,712	57,090,90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씩 증가

※ 소득 요건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이하 “피초청인”이라 함)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 신청 기관

▹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 신청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첨부해야할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기본 제출서류와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서류,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 출국 시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가. 「형법」 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일정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느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라.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 신청 대상

▹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3).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신청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첨부해야할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1호).

1.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6.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7.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대상자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2항).

▪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부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납
3. 등록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결혼이민(F-6)자격의 외국인이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공통 첨부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외국인의 체류-체류기간 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함)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등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2.2. 국적 취득

2.2.1. 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참조).

> ※ 사실혼인 경우 귀화방법
>
> 사실혼 상태라도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간이귀화가 아니라 일반귀화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참조)
  -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거주기간의 계산
  - 위 거주기간의 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그 날부터 2년 동안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前後)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1.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 한 경우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1. 및 2.에 준하는 사유로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배우자 사망·실종, 이혼·별거 및 자녀 양육
  - 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난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제4호).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요건

- 결혼이민자가 귀화를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품행 단정의 요건(「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허가 절차

귀화 허가 신청

-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 이라 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함)

②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③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②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등

▹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또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귀화적격심사

▹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본문).

※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대상

▹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라 함)을 이수한 사람 및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종합시험이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6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 및 별표3).

▹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면접심사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3호, 제4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 및 별표 4).

귀하 허가에 따른 국적 취득

▪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3항 단서).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2.2.2. 국적 취득 후 절차

외국국적 포기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 가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예외적인 경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국적 불행사에 대한 서약

▹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 제5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 또한,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 국적포기증명서 등의 제출

▹ 위 3. 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 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위 규정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외국 국적을 보유하려는 경우

▹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려는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 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청장등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의 의미

▪ "주민등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1조 참조).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를 주소라 하는데, 주소란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제1항)으로서 부재자(「민법」 제22조), 실종자(「민법」 제27조), 채무이행지(「민법」 제467조제2항) 등의 법률관계에서 기준이 됩니다.

▪ 또한,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과 마찬가지로 ①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경우, ②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됩니다.

신고 의무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절차를 마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

제출 서류

▪ 신고를 할 때에는 ①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② 기본증명서, ③ 외국국적포기확인서(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약 10일에서 14일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외국인등록증 반납 의무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청장등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참조).

반납 시기 및 방법

▪ 외국인등록증의 반납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사실상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 중 어느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할 때에는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상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아목).

※ 반납된 외국인등록증은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청장등에 의해 파기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참고).

▪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

창성(創姓) 또는 개명(改名)

"창성"과 "개명"이란?

▪ "창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성(姓)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 방식의 새로운 성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성이나 이름을 변경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창성 및 개명 절차

▪ 가정법원의 허가

▹ 창성 또는 개명을 하려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창성 허가 또는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

▹ 가정법원의 창성 허가 또는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 창성신고서에는 ① 종전의 성, ② 창설한 성, ③ 허가 연월일을 기재하고, 창성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4항 및 제5항).

▹ 개명신고서에는 ① 변경 전의 이름, ② 변경한 이름, ③ 허가 연월일을 기재하고, 개명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및 제3항).

▪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

▹ 신고를 마치면 새로운 성 또는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재취득

국적 재취득 신고제도의 의의

▪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 이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 국적회복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간단히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 재취득 신고 절차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국적취득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 제5조).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 통보서(「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4.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5.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포함)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6. 신고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방식의 성명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적취득신고서에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방식의 성명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및 제3항).

▪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3.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3.1. 사회복지 등

3.1.1. 국민연금의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참고).

국민연금의 가입

▪ 외국인에 대한 적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및 제126조 참고).

※ 국민연금 적용에서 "상호주의 원칙"이란?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 가입 유형

▹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와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요 건
사업장가입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국민연금법」 제8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국민연금법」 제9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국민연금법」 제9조 단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국민연금법」 제10조제1항)
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다음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함)으로서 노령연급 수급권 또는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만 해당) 나.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

▹ 즉,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외국인은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본문 참조).

▪ 가입 방법 및 절차

▹ 국민연금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의 연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국민연금급여에는 사고의 종류와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80조).

▪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제1항).

▪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금수급개시연령, 소득활동 등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및 제64조).

▪ 장애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에서 정하는 날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위의 2.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

√ 초진일이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초진일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4항).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또는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

▹ 다만, 위의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2항).

√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은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③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 했던 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데, 가출·실종 등으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사망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제1항 및 제4항).

중복급여의 조정

▪ 국민연금급여 간 조정

▹ 둘 이상의 국민연금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를 받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이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서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1.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 다른 법에 따른 재해보상급여와의 조정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보상·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유족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선원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보상·유족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3.1.2.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요건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함)도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제10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3.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로자가 없거나 3.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요건

▹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별표 9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3항).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다.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라.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마.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

▪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그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국민건강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보장구급여비가 있습니다.

▪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移送)의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 ※ "요양기관"이란?
>
> √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 요양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①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②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 이 경우 준요양기관은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줘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2항).

※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 전단).

▪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해서 실시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 ※ "보조기기"란?
>
> √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義肢) 등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전단).

중복급여의 조정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특히 공적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3.1.3. 고용보험의 적용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의 가입

▪ 외국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 고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그 외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1.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

3.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예술인"이라 함)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제공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 보험가입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보험급여를 받는 대상인 피보험자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

- 이하에서는 근로자인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가입 방법 및 절차

- 고용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http://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근로자)가 회사의 감원(減員) 등에 의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정기간 현금을 지급함으로서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및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에는 실업상태에 대응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참조).

종 류	내 용

구직급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실업상태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4조).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64조).

취업 촉진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5조).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6조).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7조)

▪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 급여>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위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

※ 다만, 같은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다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3.1.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외국인에 대한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한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 보험가입자와 수급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 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라.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종류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내 용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에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중복급여의 조정

-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 「민법」의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조정

▹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과 경합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2분의 1이 감액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제2호 참조).

3.1.5.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소득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 최저보장수준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을 따릅니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426,741	372,206	350,882	350,841

▹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및 신청절차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 수급권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참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 외국인에 대한 적용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자가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 절차

▪ 급여의 신청

▹ 수급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 제출 서류

▹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및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1호).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참조).

급여 종류	내 용
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의료급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것
장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등 일정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

3.1.6. 운전면허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취득

운전면허의 취득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함)를 운전하려면 안전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교통법규지식, 운전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운전면허의 종류

▪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운전면허시험 절차

▪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 면제 대상

▹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난민인정자, ④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

※ "외국면허증"이란?

√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서 ②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③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면제 범위

▹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되는 범위가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별표 3).

※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란?

√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본문 참조).

√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를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의<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를 참고 하십시오.

면제대상자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으려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적성	학과		기능	주행
				법령	점검		
1.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 제3호 및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	◎	◎	◎
2. 대한민국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 제3호 및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	◎

※ 위 표의 면제되는 시험란 가운데 '적성'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법령'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점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기능'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시험을, '주행'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험을 각각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이 외교(A-1)·공무(A-2)·협정(A-3)·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특정활동(E-7) 또는 재외동포(F-4)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운전면허증의 발급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협약(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 비엔나 협약(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 및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참조).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참조).

※ 제네바 협약국 및 비엔나 협약국을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의<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를 참고 하십시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 금지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제147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1.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관해 「도로교통법」상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와 같이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2항, 제147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 제출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은 금지기간이 끝나거나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3항).

위반 시 벌칙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대한민국에서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

▪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제네바 협약(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에 따른 국가에 가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 참조).

※ 제네바 협약국을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의 <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을 참고 하십시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

▪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시·도경찰청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국제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을 발급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및 제3항).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대한민국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제3항·제4항).

3.2. 자녀의 출생·취학

3.2.1. 자녀의 출생 신고

국적의 결정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 출생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①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②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19세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여기서 "인지"란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속인주의(屬人主義)'란 국가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와 대비되는 원칙입니다.

▪ 복수국적자가 된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 이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1항).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 위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3항).

▪ 또한, 위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출생 신고 절차

출생신고서의 제출

▪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항·제4항 본문, 제46조제1항 및 제2항).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가.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 1만원

나. 게을리한 기간이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다. 게을리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라. 게을리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마.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 5만원

▪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의 자녀인 경우 외국인 아버지가 이미 본국법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해서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제1조나호).

출생신고서에서의 자녀의 성(姓)

▪ 원칙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해야 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제1항).

▪ 예외

▹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및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제3조).

▹ 대한민국 국민인 모의 혼인외의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그 모가 부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의 성을 따르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하여야 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1조제2항).

▪ 혼인 중(법률혼) 자녀인 경우

▹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식 이름으로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해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제4조가호 및 나호).

※ 출생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의 <출생 관련 신고 — 출생신고하기 — 출생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함)[「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제1조가호].

▪ 혼인외의 자인 경우에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제1조나호).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 혼인중의 자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함)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제2조가호).

▪ 혼인외의 자인 경우에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음)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하여야 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제2조나호).

3.2.2. 자녀 보육의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세 ~ 5세아는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309쪽 참조).

>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대상(2019.1.1. ~ 12. 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동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309-310쪽 참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다만, 결혼이민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사람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

▪ 지원대상 선정 시 가족관계 등은 행복이음(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을 통해 확인되며,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350쪽 참조).

▪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재한외국인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제출자 및 외국인등록자 일부 해당)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인 또는 인지·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 다문화보육료	0세반	584,000	0
		1세반	515,000	0
		2세반	426,000	0
		3-5세반	280,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인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 적용 기간: 2026. 1월 ~ 12월

(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92쪽 참조)

※ 그 밖에 자녀 보육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영유아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3. 자녀의 취학 절차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초등·중등·고등 교육의 기회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초등·중등·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 동안은 의무교육을 받으며, 이 기간 동안의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 대한민국의 교육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과정	내 용
초등학교 이전의 교육	어린이집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어린이집 종류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유치원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 유치원은 공립·사립·국립 유치원으로 구분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
초등학교 교육	6년, 의무교육(무상)	·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중학교 교육	3년, 의무교육(무상)	· 입학시험이 없음 · 한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과목을 배움 ·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으며, 부모가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
고등학교 교육	3년	·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 · 2021년부터 무상 교육(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고등(대학) 교육	2 ~ 4년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 대학의 등록금이나 학비는 각자 내야 하지만, 국가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대출제도 사용 가능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의무교육의 취학 시기

▪ 초등학교 취학시기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전단).

▪ 중학교 취학시기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

▪ 위반 시 과태료

※ 정해진 기간 내에 자녀 또는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은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 또는 교육장, 교육감 등으로부터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촉·독려받게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참고).

▹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 및 별표 3).

의무교육의 취학 절차

▪ 초등학교 입학·전학 절차

▹ 읍·면·동의 장은 아동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위의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 중학교 입학 절차

▹ 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고, 교육장의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따라 중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제71조 참조).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전·입학 절차

전·입학 절차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위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3.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3.3.1. 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사증 발급 신청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제출서류는 사증을 신청하는 국가와 신청자에 따라 덧붙여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2. 신원보증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3. 인감증명서(초청자의 인감) 1부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서명을 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표(등본) 7. 초청인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8.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9.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결혼이민(F-6-1) 비자 사본 10.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11. 재정능력입증서류 12. 초청 목적 사유가 있는 경우 1)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신청인 구비서류] 1. 여권 2.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3.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사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4.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의 호적부 사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5.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6.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 가.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의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나. 재직증명서 및 휴가신청서 다. 재정능력 입증 서류 7. 신청인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 원본(초청가능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며 초청장에 인감날인 필요)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3.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제출 4. 인감증명서 원본 1부 5. 초청인 신분증 사본,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6.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결혼이민사증(F6비자) 사본 7.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 서류(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8.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9. 출산간호를 위한 입국일 경우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10. 결혼식 참석을 위한 입국일 경우 청첩장 원본 및 예식장 사용계약서 사본 [신청인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캄보디아어본 및 영어번역본) 2.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3. 여권 및 여권사본, ID카드 사본, 증명사진 1매, 비자신청서 작성

※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각 나라마다 다르므로 신청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증 발급 시 유의 사항

▪ 사증 발급 신청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새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허위초청 등의 금지

허위초청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3.3.2. 가족·친지의 방문 절차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대상 및 면제

▪ 재입국허가 대상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 재입국허가 면제

▹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본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체류자격 영주(F-5)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체류기간으로 함)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되지 않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단서).

재입국허가 신청

▪ 재입국허가를 받으려면 재입국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 재입국허가기간은 기존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3항).

▪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이 찍히고 재입국허가기간이 기재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신청

▪ 연장 사유

▹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 연장 신청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1항).

여권 발급

"여권"이란?

▪ 여권의 의미

▹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소지자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그 밖에 여행의 목적을 표시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여권의 이용

▹ 여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비자를 신청할 때, 출국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외국에 입국할 때와 귀국할 때
2. 환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여행자 수표를 지불할 때
3. 여행자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여권 발급 신청

▪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5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1. 여권 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함]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5.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함)
7.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효력 상실

▪ 여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

√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

√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분실을 신고한 경우

√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경우

√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경우

√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경우

√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단수여권(1회만 사용되는 여권을 말함)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경우

여권의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1. 여권에 기재된 정보(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의2제2항제3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가.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다.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으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함)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마.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바.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아.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자.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차.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카.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여권 분실 사실을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여권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재발급 신청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1. 여권 재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단,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 ※ 여권 재발급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비자•여권』의 <여권-여권의 발급 및 사용 등-여권 재발급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재발급의 거부·제한

▪ 여권 발급·재발급의 거부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1항).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3. 2.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2.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5. 2.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람

▪ 여권 발급·재발급의 제한 사유

▹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기간</th></tr>
<tr><td colspan="2">「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사람</td><td>2년</td></tr>
<tr><td colspan="2">「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td><td>1년</td></tr>
<tr><td rowspan="3">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강제퇴거 조치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td><td>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td><td>3년</td></tr>
<tr><td>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td><td>2년</td></tr>
<tr><td>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td><td>1년</td></tr>
</table>

※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제3항 참조).

여권 사용 시 준수사항

▪ 부정한 발급·행사의 금지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 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위 1.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 위 2. 또는 3.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5조).

√ 위 4. 또는 5.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

√ 위 1.부터 5.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 방문·체류 등 금지 지역 입국의 금지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를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 ※ 방문·체류 등이 금지되는 지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여행금지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체류 등 금지 지역의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1. 「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해서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위의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제2호).

3.4. 배우자 사망·상속

3.4.1.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준거법의 결정

상속에 대한 준거법의 결정

▪ 상속은 사망 당시 상속을 하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1항).

▪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할 때에는 그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2항).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상속

상속 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위의 1.과 3.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배우자의 상속 순위

▪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1항 및 제5항).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3.5. 다문화가족 지원

3.5.1.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또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다문화가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